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6. 1.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9년 5월 21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9년 5월 26일
- 라. 상정일자 :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9년 5월 27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가. 개 정 이 유

- 날로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자연재난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재난관리를 행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민간 단체 전문가들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명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이라 정함(안 제3조)
- 단장, 부단장 및 간사 등 방재단의 임원과 이들의 임무를 규정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분할 것과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방재단 내에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한 지

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함(안 제7조)

-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 피해 지원요건과 기능에 따라 반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단원의 활동 및 확인절차 등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구청장은 단장이 제출한 연중 활동계획에 따라 식대·여비·유류비 등 단원의 필수 경비, 보험가입비, 피복비, 단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 교육·훈련 관련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무실 및 방재물품 보관장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지원하는 등 방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방재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2조)
- 단원의 임무수행시 출입증을 소지하도록 함(안 제14조)
- 방재단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총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고, 단장은 그 중 연 1회 4시간 이상을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5조)
-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7조)
-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을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안 제18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함(안 부칙)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재해의 예측불가로 인하여 행정력만으로는 재해의 사전예방 및 복구에 한계가 있어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활동에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 조직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등포구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제61조(소집),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제65조(예산지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의 설치목적과 구성, 임원의 임기와 임무, 방재단의 소집과 교육 훈련, 금지사항 그리고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과 자율방재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와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제출되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조직과 단체 전문가 조직을 통해서 재난 관리를 행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예방과 복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운영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3 호
----------	---------

제출연월일 : 2009.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날로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는 자연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고, 또한 기존 민간조직의 활동은 피해발생 후 현장지원이 대부분으로 재난의 예방분야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 대비, 초기대응과 피해의 조기수습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방재전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명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이라 정함(안 제3조)
- 나. 단장, 부단장 및 간사 등 방재단의 임원과 이들의 임무를 규정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분할 것과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방재단 내에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함(안 제7조)
- 라.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 피해 지원요건과 기능에 따라 반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마. 단원의 활동 및 확인절차 등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바. 구청장은 단장이 제출한 연중 활동계획에 따라 식대·여비·유류비 등 단원의 필수 경비, 보험가입비, 피복비, 단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 교육·훈련 관련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무실 및 방재물품 보관장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지원하는 등 방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사. 방재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2조)
- 아. 단원의 임무수행시 출입증을 소지하도록 함(안 제14조)
- 자. 방재단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총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고, 단장은 그 중 연 1회 4시간 이상을 전문기관에서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5조)
- 차.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 카.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7조)
- 타.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을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안 제18조)
- 카.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함(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9. 3.26. ~ 4.15.)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③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일반조직과, 전문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동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7.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9. 재해 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어 구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방재단관리시스템·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즉시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① 단장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 ④ 구청장은 방재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장

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 등은 제10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방재단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 관리, 동시 정보전송을 통한 소집, 협의회의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및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을 위해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 및 단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방재단의 활동내용과 방재정보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4조(출입증 발급) 단원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총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6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